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매뉴얼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대상자〉

- ◆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사람으로서 방문형 실업인정 대상자가 아닌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은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코로나19 관련 지침)
- ◆ 1차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1차 실업인정 인터넷 강의를 듣고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및 본인인증

-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 우측의 ‘개인로그인’을 클릭 합니다.
- ②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PASS인증, 디지털원패스 중 한 가지 방법 선택)

개인 로그인

개인방화벽 프로그램 격용 ※ 개인방화벽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PC에 타인의 침입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격용 ※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위해 입력하는 개인 정보(주민번호, 비밀번호등)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인증 방법을 선택하여 주세요.

인증방법 저장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PASS 인증	디지털원패스
----------------	-------	---------	--------

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입력하신 정보는 본인 인증에만 사용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뒷자리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2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접속

- ① 메인페이지의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하거나, '개인서비스 → 실업인정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를 통해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화면으로 접속합니다.



3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서 작성

- ①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으로 접속하면, 실업인정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서로 다른 화면이 나타납니다.
- ①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가 맞으면,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Online application for unemployment certification) form. The form is divided into three steps: 1. 실업인정 정보 (Unemployment information), 2. 재취업 활동 (Job search activities), and 3. 작성 내용 확인 (Check content). The first step is active and shows fields for applicant information and unemployment details.

1. 실업인정 정보		2. 재취업 활동	3. 작성 내용 확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실업인정			
소정급여일수(남은일수)	총 실업인정일수		
수급기간	수급기간 만료일		
구직급여일액			

㉠ 수급자격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실업인정 대상자가 아니라는 화면

☞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i 귀하는 실업인정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000] 수급자격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0(유료)

되돌아가기

㉡ 방문 실업인정 대상자라면, 고용센터에 방문하라는 화면

☞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i 귀하는 실업인정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001] 센터출석일 신청자입니다.

해당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센터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지정된 출석일 이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0(유료)

되돌아가기

㉢ 지정된 실업인정일이 아니라면, 신청할 수 없다는 화면

☞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i 귀하는 실업인정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지정된 출석일 이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0(유료)

되돌아가기

②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가 맞으면, 아래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가. '실업인정 정보' 작성(①~⑧)

- ① 신청인: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때 작성된 기본 정보입니다. 기본 정보는 직접 수정할 수 없습니다. 변경하려면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 ② 실업인정: 신청인의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 관련 정보입니다.
 - 소정급여일수(남은일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때, 정해진 총 구직급여 지급일수와 앞으로 남아있는 지급일수입니다.
 - 총 실업인정일수: 현재까지 실업인정을 받은 총 일수입니다.
 - 수급기간 : 수급자격신청일부터 수급만료일까지의 기간입니다.
 - 구직급여일액 : 하루에 지급되는 구직급여액입니다.

[홈](#)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신청방법 안내

1. 실업인정 정보

2. 재취업 활동

3. 작성 내용 확인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실업인정

소정급여일수(남은일수)	120일(84)일	총 실업인정일수	36일
수급기간	2021/01/13 - 2021/05/19	수급기간 만료일	2021/05/19
구직급여일액	37,575 원		

③ 신청서: 이번 실업인정일 관련 정보입니다.

- **지정된 출석일:** 이번에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
 - **실업인정대상기간:** 지난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 (지정된 출석일)까지의 기간입니다.
 - **계좌번호:** 구직급여를 받을 계좌를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하려면,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통장사본' 항목에 새로 등록한 계좌의 사본을 첨부합니다.(사본을 첨부하지 않으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음)
- * 통장사본은 실물 통장의 사진, 인터넷 बैं킹 화면의 사진 또는 스크린샷 등 입력한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어야 함
- * 자세한 계좌등록 방법은 17페이지 확인

③ 신청서

지정된 출석일 (실업인정일)	2021/04/12 (5회차) (제출일 : 2021/04/12)	실업인정 대상기간	2021/03/06 ~ 2021/04/12
--------------------	--	-----------	-------------------------

지급은행	<input type="text"/>	검색	예금주	<input type="text"/>	
계좌번호	<input type="text"/>	신규/변경 등록여부	<input type="radio"/> 기존	<input checked="" type="radio"/> 신규	<input type="radio"/> 변경

i 이전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당시 구직급여를 받은 계좌번호가 기본값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없어 계좌번호를 신규 등록해야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계좌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각각 '신규' 또는 '변경'에 체크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사본

신규 등록 또는 변경할 계좌번호의 통장사본
(파일명에 특수문자를 넣지마세요.) + -

- 계좌를 신규 등록 또는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통장사본을 등록하지 않으면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 첨부할 수 있는 최대파일크기는 15MB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첨부할 수 있는 확장자는 <txt, chm, tiff, jpeg, png, psd, rar, 7z, arj, lzh, tar, gz, alz, zip, jpg, gif, doc, docx, ppt, pptx, xls, xlsx, hwp, pdf>만 가능합니다.
- 이미지파일 확장자(bmp → jpg) 변경 방법 안내 ↓

④ 실업크레딧(예술인 구직급여 수급자 제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희망 여부 등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희망여부: 구직급여 수급기간에도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하지 않고 실업크레딧을 통해 납부를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함'을 선택

* '신청함'을 선택하면, 그 아래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희망 시 고지서 수령 방법', '국민연금 보험료 자기부담금 납부 시 자동이체 희망 여부', '재산 소득 확인 동의 여부' 등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4

실업크레딧(예술인 구직급여 수급자 제외)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희망 여부

신청함 신청하지 않음
(실업크레딧신청일자: 2020/08/25)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희망 시 고지서 수령 방법

우편고지 전자고지

국민연금 보험료 자기부담금 납부 시 자동이체 희망 여부

희망함 희망하지 않음

재산 소득 확인 동의 여부

예 아니오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실업크레딧 신청만 가능합니다.('16.7.25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신청가능)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일 시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 제도 안내 및 신청 내역 변경(신청취소, 정보변경, 재신청) 관련사항은 국민연금 공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공단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 국민연금 공단 지사찾기

[바로가기](#)

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일을 했거나 소득이 발생했으면, '예'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다면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 일했거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숨기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어떠한 형태로 일했더라도 모두 신고해야 하고,(공공근로, 아르바이트, 회의 참석, 자문 등) 신고된 내용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취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며, 취업한 날에 대해서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⑥ 산재 휴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권이 있는 사람은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⑦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했거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취업사실 신고** 메뉴에 접속하여,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취업을 신고하면 됩니다.
(취업 신고를 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재직증명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⑧ '다음' 버튼을 선택하여 재취업 활동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취업(아르바이트, 일용근로 포함), 사업자 등록, 기타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전액 환수 및 2배 추가징수와 아울러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내역 더보기 ▾

⑤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어떠한 형태로든(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를 하거나 수당이 발생하는 회의참석등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더보기 ▾

⑥ 산재 휴업급여를 지급 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취업내역 더보기 ▾

⑦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예정)이나 개인 사업을 개시하셨습니까? 예 아니오

⑧ **다음**

나. '재취업 활동' 작성(①~③)

- ①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고 체크 합니다.
- ② 이번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면 있음,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없음을 선택합니다.

* 구직활동이란 구인응모, 입사지원, 면접 등을 의미합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신청방법 안내

1. 실업인정 정보

2. 재취업 활동

3. 작성 내용 확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취업(아르바이트, 일용근로 포함), 사업자 등록, 기타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전액 환수 및 2배 추가징수와 아울러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등 관련 안내

취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숨기거나,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환수되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인해 반환해야 하는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①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고 숙지하였습니다.

1. 구직활동내역

Tip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을 할 경우 별도의 첨부파일을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워크넷을 이용하시면 구직활동/실업인정신청이 더욱 편리합니다.

워크넷 바로가기

②

전체기간 중 구직활동이 있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있음
 없음

③ '있음'을 선택했으면, '구직활동내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워크넷으로 입사 지원을 했으면, '구직활동확인(워크넷)'을 선택하여 해당 내용을 바로 불러올 수 있으며 별도의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구직활동은 실업인정대상기간에 1회 수행합니다.(코로나19 관련 지침)
- '구직활동일자', '사업체명', '인사담당자(담당부서)', '전화번호', '모집직종', '구직방법', '응모방식', '활동결과'는 필수입력 사항입니다.

④ 재취업활동으로 구직활동 외 활동을 했으면 '있음'을 선택하고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을 작성합니다.

⑤ 구직활동(입사지원 내역, 팩스 등) 또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직업 훈련 수강증 등)에 관련된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⑥ 다음 실업인정일까지 수행할 계획인 활동(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등)을 선택하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⑦ 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방법을 선택하고 내용 입력합니다.

⑧ 내용 입력을 완료했으면, 임시저장을 하고 다음단계로 진행합니다.

2.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Tip

온라인 취업특강은 각 과정 1회 수강 시 자취업활동 1회로 인정되며, 별도의 첨부파일을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 취업특강 바로가기](#)

④

전체기간 중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으신가요?

ex) 경력제, 직업훈련, 부당해고 구제자, 일자리희망 프로그램 등

있음 없음

과정

세부내역(훈련기관,과정명,기간 등)

선택하세요

⑤ 첨부구비서류

구직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파일명에 특수문자를 넣지마세요.)

[찾아보기](#)

+

-

- 구직활동내역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하지 않으면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 첨부할 수 있는 최대파일크기는 15MB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첨부할 수 있는 확장자는 <txt, chm, tiff, jpeg, png, psd, rar, 7z, arj, lzh, tar, gz, alz, zip, jpg, gif, doc, docx, ppt, pptx, xls,xlsx, hwp, pdf>만 가능합니다.
- 이미지파일 확장자(bmp → jpg) 변경 방법 안내 [다운로드](#)

⑥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보기](#)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

선택하세요

⑦ 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 방법

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 방법 *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이전](#)

[초기화](#)

⑧

[임시저장](#)

[다음](#)

다. '작성 내용 확인'작성

① 미리보기: 작성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정 : 수정 버튼을 이용하여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삭제 :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했던 내용이 모두 삭제됩니다.

② 제출: 작성된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제출 버튼을 선택하여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작성된 내용을 임시저장만 하고 전송하지 않으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일이 아니거나 전송시간(한국시간으로 실업인정일 00:00~17:00)이 지난 경우에는 전송이 불가합니다.

③ 완료: 제출이 완료되면, 완료가 표시됩니다. 실업인정 신청서에 입력한 휴대전화로 제출 완료 문자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방법 안내

1. 실업인정 정보 2. 재취업 활동 3. 작성 내용 확인

① 미리보기 제출 ③ 완료

현재까지 작성한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입니다.

공지사항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00:00 - 17:00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인정 처리결과를 거쳐야 하므로 최대 5일 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당일 출근 예정일 경우 관할센터에 연락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윈도우10의 경우, "이 페이지에서 추가 메시지를 만들도록 허용하지 않음"에 체크하지 마시고 진행하세요.
 (이미 체크하였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 새 창에서 진행하세요.)

~~~ 생략 ~~~

작성시 유의 사항

- 기재하신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및 지원금 등을 신청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반환 및 추가징수)과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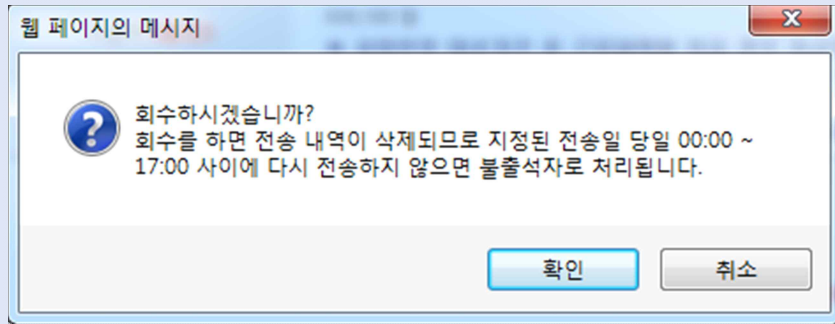
주요 부정행위 유형

- 피보합자격 취득·상실 허위신고(위장고용, 해고 등)
- 이력사유 허위 기재
- 취업사실 은닉, 근로소득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 미신고

수정    삭제    ② 제출

### <참고> 전송내역 회수

-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내용을 수정하려고 할 때는 제출한 신청서를 회수한 뒤 수정합니다. 수정을 하고나면, 반드시 다시 전송(같은 날 17:00까지)하셔야 합니다.



## 5 실업인정 신청서 진행사항 조회(①~③)

- ① 개인서비스 '민원 처리 현황' 메뉴를 통해 실업인정 신청서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조건을 설정하고 '검색' 버튼을 선택합니다.
- ③ 본인의 민원 처리 내역이 조회됩니다.
  - 미전송 : 미전송으로 현재 작성 중인 상태
  - 전송완료 : 전송이 완료된 상태
  - 접수완료(처리중) : 전송된 서류를 고용센터에서 처리 중인 상태
  - 처리완료 : 전송한 서류의 처리가 완료된 상태
  - 보완: 전송한 서류를 고용센터에서 보완 중인 상태(고용센터에서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 반려: 전송한 서류를 고용센터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반려한 상태

1 **실업급여**

**민원처리현황**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 수급기간 연기(변경) 신고
- 수급자격증 재교부 신청
-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청구
- 개별연장급여 신청
- 상병급여(일반)청구

**민원처리현황**

|           |                                                                                                                                               |
|-----------|-----------------------------------------------------------------------------------------------------------------------------------------------|
| 온라인(홈페이지) | 센터에서 신청                                                                                                                                       |
| 업무구분      | 실업급여 <span style="float: right;">확인</span>                                                                                                    |
| 서식        | 전체                                                                                                                                            |
| 처리상태      | 전체                                                                                                                                            |
| 기간별       | <input type="checkbox"/> 1주일 <input type="checkbox"/> 2주일 <input type="checkbox"/> 1개월 <input type="checkbox"/> 3개월                 (접수일자 기준) |
| 기간 설정     | 2021.02.01 ~ 2021.03.01                                                                                                                       |

2 **검색**

**민원 처리 현황**

총 1 건

접수번호를 클릭하시면 상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연<br>번 | 접수번호     | 접수일<br>(처리기한)              | 처리상태                                                                          | 처리기관  | 전송처리         |
|--------|----------|----------------------------|-------------------------------------------------------------------------------|-------|--------------|
|        | 민원업무(서식) | 처리일<br>(지급일)               | 처리자                                                                           | 오류메세지 | 반려요청<br>(회수) |
| 1      | [접수번호]   | 2021/03/01<br>(2021/03/09) | 작성중(미전송)<br><span style="color: orange;">(2021/03/24, 17시까지<br/>전송 요망)</span> | [기관명] | 삭제           |
|        | 실업인정 신청서 |                            |                                                                               |       |              |

3

1



**처리상태 안내**

- **미전송:** 민원인이 작성한 신청(신고)서를 작성중인 상태입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각 신청(신고)서 신청화면에서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관할센터로 신청(신고)서가 접수됩니다.
- **전송완료:** 민원인이 제출한 신청(신고)서가 관할센터로 전송된 상태입니다.
- **처리중:** 민원인이 제출한 신청(신고)서가 관할센터로 접수완료되어 처리가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신고서별로 처리 기한이 차이가 있습니다.
- **처리완료:** 민원인이 제출한 신고(신청)서가 처리완료된 상태입니다. 실제 지급시점은 해당 고용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보완:** 민원인이 제출한 신고(신청)서에 대하여 관할센터 담당자가 검토하여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는 상태입니다.
- **반려:** 민원인이 제출한 신고(신청)서가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 해당 신고서를 반려한 상태입니다. 반려된 신고(신청)서는 상세내역을 조회하여 반려사유 확인 후 내용을 보강하여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고용센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자나 요양 중인 사람으로서 휴업급여를 수급 중인 사람 또는 수급권이 있는 사람
- ② 전산장애, 실수 등으로 인해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한 경우

## 2.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날로 보고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제1호)
- ②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또는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때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일용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일용근로로 얻은 소득과 무관하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서 일용근로를 한 날을 제외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 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이 소득에는 근로자로서의 임금뿐만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고 받은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번역료, 회의수당, 자문료, 강사료 등)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④에 해당되는 날은 제외하고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가업 또는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거나,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 발생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⑥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 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⑦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예술인 또는 단기예술인, 노무제공자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 노무를 제공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은 취업한 날로 봅니다.
  - ①~⑥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거나, 정기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전업 주식 투자자, 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 3. 재취업활동 확인자료 파일첨부 방법

- 첨부할 파일이 있으며, <첨부구비서류>란을 클릭하여 제출할 파일을 찾아 첨부하면 됩니다. 이메일 입사지원 내역 등은 아래 상자의 내용과 같이 파일을 생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 모니터 화면에 캡처할 화면을 띄운다.
- 키보드의 프린트스크린(Prt Scr 또는 Print Screen) 버튼을 누른다.
- 모니터 왼쪽 하단의 시작 - 프로그램 - 보조프로그램(또는 Windows 보조 프로그램) - 그림판을 실행시킨다.
- 그림판 상단 메뉴에서 편집 - 붙여넣기(또는 Ctrl+V)를 한다.
- 그림판 상단 메뉴에서 파일 - 저장(또는 Ctrl+S)을 한다.

#### 4.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시행규칙 제87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0조)

- ①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②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 ③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 ④ 고용센터의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
- ⑤ 어학,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수강, 시험 응시
  - \*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학원은 제외되며,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정해서 인정
- ⑥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 참여  
(4시간 이상의 활동을 1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⑦ 자영업 준비 활동
- ⑧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새일센터 등 각종 취업지원기관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상담
- ⑨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육·컨설팅 참여
  - \* 단, 프로그램 참여로 지급받는 활동비 등 수당이 구직급여를 초과하면 구직급여는 미지급
- ⑩ 직업심리검사 등(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도 인정)
- ⑪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공·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온·오프라인 취업역량 교육 수강
  - \* (예시) 취업컨설팅 회사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클리닉
- ⑫ 일반 기업의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이수
  - \* (예시) 이직한 직장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전직지원프로그램 등
- ⑬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중 관련 수급자에 대해서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취·창업 교육, 컨설팅도 인정
- ⑭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한 구직신청서 내실화(전체 실업인정기간 중 최대 2회만 인정)
- ⑮ 민간 직업소개소 등에 구직등록 인정(1회만 인정, 민간 취업포털사이트는 해당없음, 수급자격 신청 시 하는 구직등록은 불인정)
- ⑯ 고용복지+센터 입주기관 등 취업상담(실업인정 담당자가 상담을 지시하는 경우에 한함 → 고용복지+센터 전산상 연계)
- ⑰ 8시간 미만의 직업지도 또는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동일 프로그램은 2회까지만 인정)
- ⑱ 기타(선원 구직등록, 근로자파견업체 구직 접수,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 제공, 고령자의 경우 지자체 인생재설계 프로그램 참여 인정(단, 150일까지만 인정))



## 5. 계좌 신규 등록 및 변경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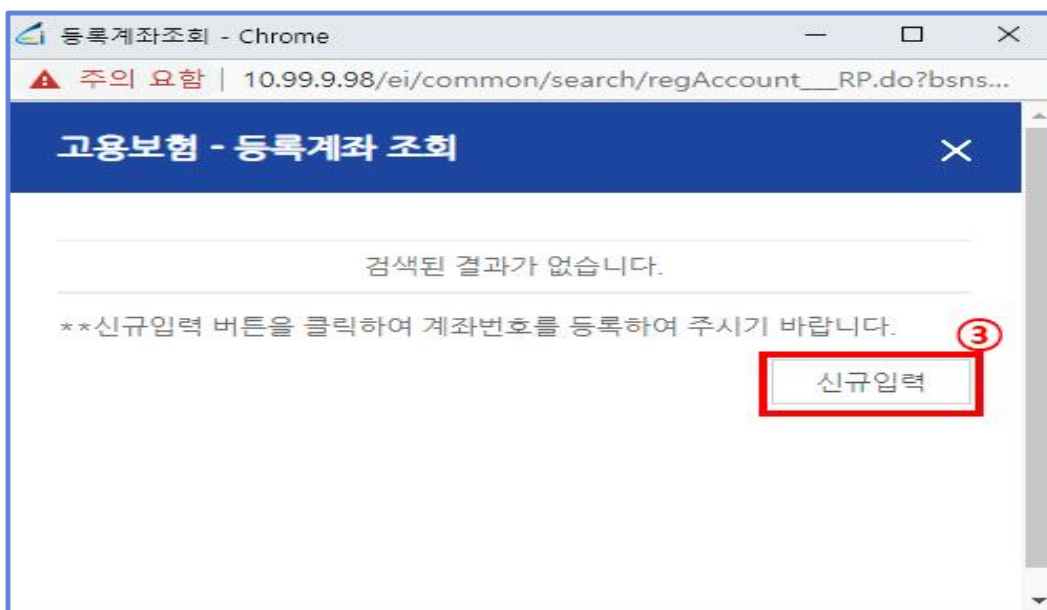
### 가. 기존에 입력된 '실업인정 계좌번호'가 없는 사람

| 신청서                |                                        |            |                                                                                       |
|--------------------|----------------------------------------|------------|---------------------------------------------------------------------------------------|
| 지정된 출석일<br>(실업인정일) | 2021/04/12 (5회차)<br>(제출일 : 2021/04/12) | 실업인정 대상기간  | 2021/03/06 ~ 2021/04/12                                                               |
| 지급은행               |                                        | 예금주        |                                                                                       |
| 계좌번호               |                                        | 신규/변경 등록여부 | <input checked="" type="radio"/> 기존 <input type="radio"/> 신규 <input type="radio"/>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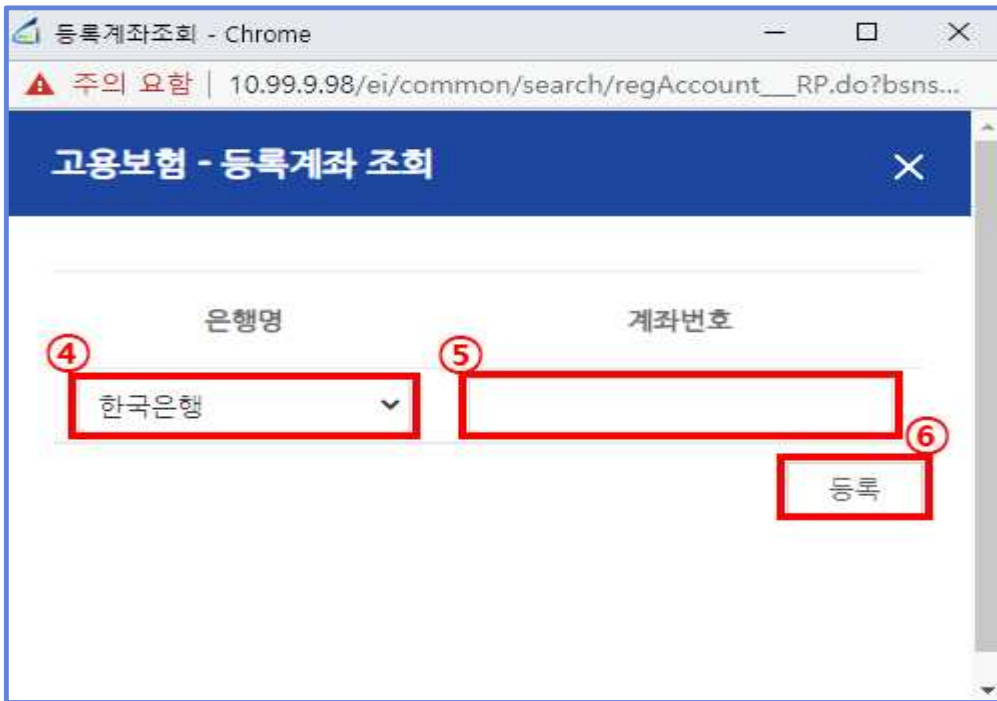
① 신규/변경 등록여부 항목의 '신규'를 선택합니다.

| 신청서                |                                        |            |                                                                                       |
|--------------------|----------------------------------------|------------|---------------------------------------------------------------------------------------|
| 지정된 출석일<br>(실업인정일) | 2021/04/12 (5회차)<br>(제출일 : 2021/04/12) | 실업인정 대상기간  | 2021/03/06 ~ 2021/04/12                                                               |
| 지급은행               | <input type="text" value="검색"/>        | 예금주        |                                                                                       |
| 계좌번호               |                                        | 신규/변경 등록여부 | <input type="radio"/> 기존 <input checked="" type="radio"/> 신규 <input type="radio"/>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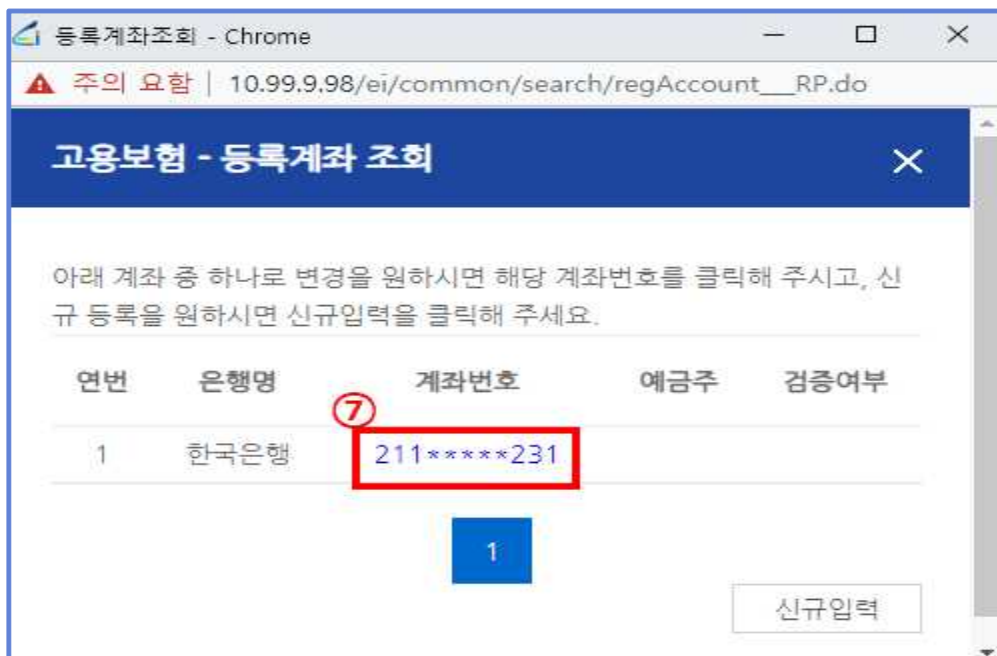
② 지급은행 칸에 생성된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신규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④ 은행명을 선택합니다.
- ⑤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 ⑥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⑦ 계좌번호를 클릭합니다.

## 신청서

지정된 출석일 2021/04/12 (5회차)  
(실업인정일) (제출일 : 2021/04/12)      실업인정 대상기간 2021/03/06 ~ 2021/04/12

지급은행 한국은행       예금주 기등록계좌없음

계좌번호 211\*\*\*\*\*231      신규/변경 등록여부  기존  신규  변경

**i** 이전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당시 구직급여를 받은 계좌번호가 기본값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없어 계좌번호를 신규 등록해야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계좌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각각 '신규' 또는 '변경'에 체크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장사본

신규 등록 또는 변경할 계좌번호의 통장사본  
(파일명에 특수문자를 넣지마세요.)

+ -

⑧

- 계좌를 신규 등록 또는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통장사본을 등록하지 않으면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 첨부할 수 있는 최대파일크기는 15MB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첨부할 수 있는 확장자는 <txt, chm, tiff, jpeg, png, psd, rar, 7z, arj, lzh, tar, gz, alz, zip, jpg, gif, doc, docx, ppt, pptx, xls, xlsx, hwp, pdf>만 가능합니다.
- 이미지파일 확장자(bmp → jpg) 변경 방법 안내  ↓

⑧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계좌번호의 통장사본을 반드시 등록합니다.

⑨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 후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가 계좌번호를 검증하고 확정합니다.

나. 기존에 입력된 '실업인정 계좌번호'가 있는 사람

신청서

|                    |                                        |            |                                                                                       |
|--------------------|----------------------------------------|------------|---------------------------------------------------------------------------------------|
| 지정된 출석일<br>(실업인정일) | 2021/04/12 (5회차)<br>(제출일 : 2021/04/12) | 실업인정 대상기간  | 2021/03/06 ~ 2021/04/12                                                               |
| 지급은행               | 한국은행                                   | 예금주        |                                                                                       |
| 계좌번호               |                                        | 신규/변경 등록여부 | <input checked="" type="radio"/> 기존 <input type="radio"/> 신규 <input type="radio"/> 변경 |

- ① 기존 계좌번호를 계속해서 쓰려면 기존, 새로운 계좌를 등록하려면 신규, 기존에 썼던 다른 계좌로 변경하려면 변경을 누릅니다.
- 기존을 선택한 경우에는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지 않고 다음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 신규를 선택하면 17~19페이지의 절차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변경을 선택하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등록계좌조회 - Internet Explorer

https://10.99.9.98/ei/common/search/regAccount\_\_RP.do?bsnsSe=1&cno 인증

### 고용보험 - 등록계좌 조회

선택하실 계좌번호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연번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검증여부 |
|----|-----|----------------|-----|------|
| 1  | 은행  | 141*****42     | 임   | Y    |
| 2  | 은행  | 123*****1221   | 임   | Y    |
| 3  | 은행  | 112*****2332   | 임   | Y    |
| 4  | 은행  | 361*****812001 | 임   | Y    |

1

신규입력

- ② 변경을 선택하면 과거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기록이 있는 계좌가 조회됩니다. 검증여부가 Y인 계좌를 선택하면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검증여부가 없는 계좌를 선택하면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신규 또는 변경을 선택했다가 기존을 선택하는 경우

- 신규 등록 또는 변경한 계좌번호가 삭제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구직급여를 받았던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첨부한 통장사본 파일도 삭제됩니다.

